

미군정기 부산지역 귀속사업체의 점수에 관한 연구

김 대 래(신라대학교 경제학과)

배 석 만(동경대학 객원연구원)

目次

- I. 서론
- II.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공장의 검토
- III. 미군정기 귀속사업체의 점수
- IV. 결론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에 관한 논의는 오늘날 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적 삶과 관련되어 있는 매우 실천적인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방이후 식민지 지배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식민지적 수탈과 약탈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자원과 생산물의 약탈은 물론 인력의 수탈에 이르는 광범한 식민지 지배가 한국의 자주적인 근대화를 가로막고 경제와 사회를 기형화시켜 놓았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었다.

그러다 근년에 들어와 식민지근대화론에 입각한 연구들이 다수 나오면서 식민지 시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한국 근대화의 토대는 식민지 시기에 마련되었으며 실제로 식민지시기를 통해 한국은 세계에서 이례적인 빠른 성장을 이루었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식민지 시기에 마련된 물적 기초와 근대화의 경험 그리고 교육의 효과 등은 이후 한국의 고도성장의 원천이 되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물적 기초의 중심에는 식민지기 일본인이 경영했던 사업체로 해방 후 미군정의 점수를 거쳐 1950년대 이승만정권에 의해 불하된 귀속사업체가 있다.

일제의 식민유산과 한국의 근대화를 연결하는 고리인 귀속사업체가 이후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적어도 세 가지 단계에서의 철저한 연구와 검토를 거칠 때 가능하다. 첫째는 일제가 남기고 간 귀속사업체가 얼마나 접수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해방이후 미군정에 의해 시행되었던 귀속사업체의 접수정도는 귀속사업체의 연속성 여부를 파악하는 첫 번째 고리이다. 둘째는 미군정에 의해 접수된 귀속사업체가 해방직후의 사회경제적 혼란과 관리의 부실 속에서 얼마나 존속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기업의 가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휴업상태가 길어질 경우 실물자산은 급격히 사라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셋째는 귀속사업체가 1950년대 이후의 새로운 상황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이점을 살려나가면서 성장을 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새로이 등장하는 기업과 경쟁을 벌이면서 한국 경제의 회복과 발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귀속사업체가 얼마나 되었는가가 일제식민지 유산의 연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세 단계 연구 가운데에서 첫 번째 단계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되 두 번째 단계로까지 시야를 확장하여 후속 연구에 기여하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일제의 식민지 지배의 물적 유산인 귀속사업체가 해방직후 미군정에 의해 얼마나 접수되었고 또 어느 정도 관리과정에서 유실되었는가를 부산의 사례를 통해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후술하듯이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 귀속사업체 연구의 미개척 분야에 대한 중요한 기여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2. 연구의 방법

1) 연구사의 검토

일제의 식민지배의 유산인 귀속 재산 특히 귀속사업체가 해방 직후 미군정에 의해 얼마나 파악되고 접수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무엇보다 일제 말기 일본인이 한국에서 소유했던 사업체의 전모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일제는 태평양전쟁 동안 주요 경제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다. 전쟁 수행을 위해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은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제 말기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은 식민지 시기와 해방 이후를 연결하여 이해하는 데 중대한 장애가 된다. 나아가 식민지 유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 때문에 귀속사업체의 접수 정도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도 없이 막연한 추정만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일례로 군정 당국의 시행착오로 인해 일본인이 소유했던 많은 물적 자산이 제대로 접수되지 못한 채 사라지거나 빼돌려졌다¹⁾고 주장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다 최근 몇몇의 주목할 만한 연구들이 나와 연구사의 공백을 메워주고 있다. 비록 자료와 방법론상의 한계는 있지만 이제까지의 막연한 추정을 넘어설 수 있는 성과들을 보여주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1) 일례로 “대부분의 동산류는 처분되고 부동산도 문서 위조, 친일적 한국인과의 담합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통하거나 공장 시설을 분해하여 방매 또는 전매, 기부 등을 통하여 접수 이전에 상당량의 재산이 접수망을 벗어나게 되었다.” 이대근, 1983, 「미군정의 귀속 재산 처리에 대한 평가」, 『한국 사회 연구』 I, 427쪽.

본 연구에서 사용하려는 방법론에 비해 덜 세련된 것이긴 하지만, 부산의 사례를 연구한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약 70%의 귀속공장들이 접수되었다²⁾. 부산의 사례연구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대구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는 약 74%의 접수율을 보여 준다³⁾. 이후 좀 더 많은 자료들을 이용한 연구들이 진전되었는데, 전주의 경우 접수율은 약 76%⁴⁾로 나왔으며, 광주는 57% 그리고 목포는 거의 모두 접수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⁵⁾. 한편 경남전체를 대상으로 한 추정에서 허수열은 약 34%의 탈루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⁶⁾

-
- 2) 김대래-배석만, 2002.12, 「귀속사업체의 연속과 단절(1945-1960)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사학』 33호, 73쪽.
 - 3) 김대래-배석만, 2002.12, 「귀속사업체의 탈루 및 유실(1945~1949) -대구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韓國經濟論叢』 20-2, 74쪽.
 - 4) 김대래-배석만, 2002.10, 「귀속사업체의 탈루 및 유실(1945~1949) -전주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15-5, 168쪽.
 - 5) 김대래-배석만, 2002.12, 「귀속사업체의 탈루 및 유실(1945~1949) -광주와 목포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학논집』 11-2.
 - 6) 허수열, 2003, 「해방 시점에 있어서 조선의 일본인 자산에 대한 분석-경상남도 지역의 귀속사업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제11권 제2호 참조. 한편 허수열은 김대래-배석만(2002)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부산에서 거의 대부분의 귀속사업체가 접수되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연구자들은 부산에서 접수되었어야 할 귀속사업체의 약 70%만이 접수되었음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수치는 허수열이 경남에서 추정한 34%의 탈루율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2) 신문기사에 나타난 귀속사업체의 접수상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방직후의 어수선한 상황과 미군정 접수정책의 표류과정에서 많은 귀속사업체들이 접수의 망에서 벗어나거나 유실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서는 해방직후 부산 귀속사업체의 동향에 관한 신문 기사를 검토하여 귀속사업체의 접수와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먼저 파악해 보고자 한다.⁷⁾ 접수와 관리에 관한 정확한 파악은 곤란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확인은 가능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미군정은 한국에 진주하자마자 중요 기관에 대해서는 점령초기에 빨리 접수하였다. 부산에서도 식량영단, 금융조합 그리고 남선전기 등이 우선 접수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귀속사업체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자구차원에서 결성된 관리위원회의 운영권을 승인하는 상황이 한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다 모든 일본인 재산의 처분을 동결하고 접수관리를 시작한 것은 1945년 12월 6일 군정법령 33호의 발표에 의해서였다. 이로써 비로소 부산 시내 일본인 혹은 일본인 단체의 전 부동산은 군정청의 소유가 되었고, 재산관리관을 두어 접수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이처럼 귀속사업체의 완전한 접수는 미군의 진주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접수방침과 접수 체계가 완성되기 까지 귀속사업체가 해체되거나 접수망을 벗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

7) 해방직후 부산에서 발간된 신문자료의 검토를 통해 귀속사업체를 다룬 논문으로는 차철욱, 1996.6, 「해방직후 부산경남지역 사업체 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성격」, 『지역과 역사』가 있다. 본 절의 서술에서는 이 논문을 많이 참고하였다.

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해방직후 일본자본가들의 몰자방매로 인한 사업체의 손실 가능성이다. 일본이 패망하자 일본인 자본가들은 그들이 축적해 놓은 자금을 빼내는 것은 물론 창고에 쌓여있던 원료와 완제품을 팔아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조선방직 전무 時岡昇平은 광목을, 삼화고무 사장 米倉清三郎은 고무신을 대량으로 방매하였다⁸⁾. 米倉清三郎은 방매하여 모은 돈 수십 가마니를 일본으로 가져갔다. 물건을 방매하는 부류는 자본가들만이 아니었다.⁹⁾ 이러한 몰자의 방매는 사업체의 가동을 방해 내지 중단시킴으로써 사업체로서의 존속에 장애가 되었을 것은 짐작되고도 남는다.

둘째는 사업장의 고의적인 파괴이다. 몰자의 방매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만, 기계를 파괴하는 경우도 있었다. 今泉勇은 금천알미늄 공업소에서 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기계를 파괴하여 다량의 알미늄 솔을 제조하여 중간상인에게 방매하였다.¹⁰⁾ 금천알미늄 공업소 사례와 같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매는 사업체 시설의 파괴와 제품의 망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사업체의 존속과 접수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생필품을 버리거나 방화하는 것도 파괴의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8) 박원표, 1965, 『부산의 고금』, 현대출판사, 234쪽. 조선방직의 경우 時岡昇平 전무가 남아 있으면서 운영자금을 내놓지 않고 몰자방매만 일삼았고, 삼화고무의 경우 米倉清三郎의 방매에 대항해 치열한 투쟁 이후 운영권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중보 1945.10.19.

9) 일본인이면 누구나 가정도구들을 시중에서 팔았다. 이리하여 시중에 넘쳐났던 물자들을 기반으로 해방직후 국제시장의 원류인 이른바 '뚝데기 시장'이 형성되었다. 부산에 넘쳐나는 물자를 구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도 상인들이 몰려들었다.

10) 민주중보, 1945.12.28.

있다. 일본육군 통제부 乃台중위는 1945년 8월 15일 조선운수 부산진 작업과장 友久王藏과 공모하여 휘발유 등 각종 원료와 식료품을 부정판매하고 무기와 중요물자 다수를 소각하거나 海中에 투하하였다¹¹⁾. 공장기계와 중요물자의 파괴는 접수과정에서의 탈루와 접수 이후의 유실을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셋째는 회사의 자금, 설비 등을 일본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다. 수산재벌 香雄源太郎은 현금과 주권, 채권, 보험증서 등과 하물을 싣고 몰래 밀항하려다가 적발되었다. 그리고 남선수산 사장 松本耕一郎은 어선 어구를 일본으로 밀반출하려 하였다. 남선수산 사장 松本耕一郎이 어망 어선 어구 일체를 운반선에 적재하여 일본으로 우송하려는 음모를 탐지한 종업원은 대표 김철수 지휘 하에 일본인 군인의 총탄에도 불구하고 용감히 대항하여 유형의 참극을 연출하면서도 시설을 사수하였다¹²⁾. 회사 자금이나 생산설비를 일본으로 밀반출하는 것은 생산수단의 파괴와 함께 사업체의 접수와 유지를 불가능하게 했던 직접적인 행위들이라 할 것이다.¹³⁾

11) 민주중보,

12) 차철욱, 위의 논문, 130쪽.

13) 한편 물자의 반출과 화폐의 일본유출 기도는 자연히 밀항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비로 미군정은 선박통제와 일본은행권 소지 한도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의 해상통제에도 불구하고 밀수행위는 줄어들지 않았다. 더욱이 일인자본가나 일반인의 밀수 밀항은 국내자본의 손실을 초래하는데 그치지 않고 부산 내 수송수단이 일인들의 재산운반에 대부분 동원되는 바람에 중요한 생필품이었던 식량 운반의 수송수단이 부족해져 식량부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차철욱, 위의 논문, 119쪽. 부산에 진주한 미군정도 부정 국외유출을 막기 위한 해상통제를 실시하였다. 그렇지만 밀수행위는 근절되지 않았다. 특히 미군정은 국내 방매 방지보다 국외 유출을 차단하는 데 관심을 가졌는데, 일본군을 포함한 모든 일본인을 귀환시킬 때 관부연락선만을 이용

넷째, 어수선한 틈을 타 한탕을 노리는 악덕모리배들이 사업체를 가로채려는 시도들이다. 금천알미늄 공업소의 경우 기업이 금천용이 부정방매를 하자 노동자 김창낙 한봉수가 공장 자치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였다. 노동자들은 조선기독교사회사업단에 호소하여 이를 북부경찰서에 유치시켰는데, 북부경찰서장 최종수가 금천용으로부터 고아원을 운영한다는 명분으로 강제기부를 받아 그의 친구 정성용에게 운영권을 넘겨버리는 사건이 있었다. 또 조선제유주식회사 관리위원회는 종업원 중에 이 회사를 단독으로 장악하려고 획책하던 사람이 있었으나 이를 저지하고 회사를 접수하였다. 귀속사업체 쟁탈전은 일본인들의 무분별한 방매와 모리배들의 발호를 막기 위해 결성된 상공경제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도 일부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일제시기 경제계에서 활약하였고 해방직후 사업체의 지배인이나 귀속사업체의 관리인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들 또한 귀속사업체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억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조사과정에서 위원들은 욕심나는 사업체를 몰래 접수할 음모를 꾸미기도 하고, 우수한 것을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기도 하였다¹⁴⁾. 모리배들이 일인 소유사업체를 가로채는 경우 제대로 접수가 되지 못할 것은 당연하다. 철수하는 일본인과 한국인이 공모하여 귀속사업체를 미리 빼돌리는 경우는 더욱 접수의 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경우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행위임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이상에서 검토한 일인 자본가들의 재고품 방매, 시설파괴, 생

하라고 한 것도 그 일환이었다.

14) 차철욱, 앞의 논문, 116쪽.

산수단 철수, 자본유출 등으로 해방직후 부산의 생산체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부산의 경제위축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더욱 심각했는데 일제하 부산경제가 일본과 연결되어 있는 정도가 컸다는 것과 함께 위에서 살펴본 요인들의 영향이 가세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 부산에서는 많은 사업체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또 많은 종업원들이 강제 퇴직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건준 경남지부는 부정매매 방지와 부정물품 반출 방지, 몰수 시행, 감시원 배치 등에 역점을 두었고, 건준 산하 치안대는 몰자방매를 방지하는 동시에 해상부를 설치하여 밀수행위를 막으려고 노력하였다¹⁵⁾. 부산지역 상공인¹⁶⁾들도 일인자본가들의 몰자방매와 같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부산지역 상공인과 건국준비위원회의 역할은 일본인이 경영하던 사업체의 점수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많은 일인소유 사업장에서 관리위원회가 결성되었고, 관리위원회 주도로 조업재개를 준비하였지만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작한 사업체는 많지 않았다. 대부분 몰자보관이나 시설유지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¹⁷⁾ 귀속사업체의 점수방침이 명확하게 되기

15) 부산치안사령부는 해상부를 설치하여 밀수를 단속하였는데, 1945년 9월 16일 日本丸에다가 백미 20포와 소총 20정, 기타 부정품을 다수 신고 일본으로 향하여 밀수하려하는 일본인들의 부정한 행동을 치안사령부에서 간파하여 체포하였다. 민주중보, 1945.9.20.

16) 부산지역 상공인들은 1945년 8월 29일 경남상공경제협력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준 경남본부와 공동으로 방매를 저지하였다. 첫 사업대상으로 주류공장을 선정하고 현지 조사를 나가 재고품과 대장을 조사하였다. 이때 재고품을 협력회 회장과 광공부장 명의로 공정가격에 5할을 추가하여 매수 보관하기로 하였다. 협력회는 9월 7일 경남상공경제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위원을 다시 선정하였다. 차철욱, 앞의 논문, 115쪽.

17) 일부 관리위원회는 운영자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재고품을 처분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동광고무주식회사의 관리위원장 김경옥 이하 간부 9명은

직전인 1945년 11월 말까지 부산에서 관리위원회가 공장경영의 위임장을 받아서 조업하고 있는 곳은 삼화고무, 흥아고무, 조선고무조대, 조선방직, 旭견직, 부산해운, 조선기선, 일경산업, 조선금속 등 10여 공장에 불과했다¹⁸⁾.

해방직후 귀속사업체에 관한 신문기사는 일인 소유 사업체들이 기계의 파괴, 물자의 방패, 생산수단의 유출 등으로 미군정의 접수이전에 사업체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예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 해방직후의 혼란스런 상황에서 일본인과 한국인이 결탁하여 접수망에서 벗어나거나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관리의 부실로 인한 유실의 위험에 직면했음을 확인하게 한다. 그렇지만 개별 사례들이 구체적인 기업의 이름과 함께 상세히 보도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러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 현실화 되었는지 확인하기는 곤란하다고 하겠다.

3) 연구의 방법

귀속사업체가 접수과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고 또 이후 관리과정에서 얼마나 유실되었는가에 대한 연구가 크게 진전되지 못한 것은 기본적으로 자료의 부족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살펴볼 연구의 방법은 그러한 자료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될 것이다.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주요한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장제품을 판매하여 종업원들의 급여로 제공하려다가 붙잡혀 자금 유용혐의로 구속되었다. 흥아고무 김일조(가명)도 동일한 이유로 북부 경찰서에 유치당하였다. 차철욱, 앞의 논문, 137쪽.

18) 차철욱, 앞의 논문, 135쪽.

(1) 접수대상의 확정

첫째, 먼저 일제 말기 부산에서 일본인들이 소유했던 제조업체수를 확정하여야 귀속사업체의 규모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일제는 태평양전쟁 기간 동안 자료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방직전에 부산에서 일본인들이 소유했던 제조업체의 수를 직접적으로 알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예비적 작업으로서 입수가 가능한 1930년대 후반 및 1940년대 초의 모든 자료를 먼저 분석한다. 부산의 『부세일반』, 『市史』, 『市誌』 그리고 『공장명부』(조선총독부식산국, 1937.5 ; 1942.10) 및 『은행회사조합요록』(동아경제시보사, 1940)을 분석한다.

이들 자료에서 1930년대 중반부터 1940년대 초에 이르는 시기의 제조업체수의 추이와 업종별·민족별 제조업체의 분포를 확인한다. 그리하여 전체 제조업체 중 일본인 소유 제조업체의 비율 추이와 전체 제조업체 가운데에서 회사기업¹⁹⁾이 점하는 비중의 추이, 그리고 회사기업 가운데 일본인 소유 비율을 확인한다.

둘째, 일제 말에서 해방이후까지 유일하게 시계열이 확인되는 제조업 회사기업 수의 추이를(조선은행조사부, 1949) 근거로 일제 말 전체 제조업체수의 추이를 추정한다. 이를 위해 앞에서 구한 전체 제조업체 가운데 회사기업이 점하는 비율을 이용한다.

셋째, 일제 말 전체 제조업체 수에 관한 이러한 추정이 제대로 실상을 반영한 것인지를 검증한다. 이를 위해 남조선과도정부(1948) 자료와 비교한다.²⁰⁾ 그런데 이 자료는 앞의 『공장명부』에

19) 여기서 회사기업이라 함은 개인기업이 아닌 주식, 유한, 합자, 합명회사 형태의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쓰고자 한다.

20) 이 자료는 1946년 11월 현재의 시점에서 남한에 존재하는 5인 이상 고용 제조업체를 조사한 것이다. 일제 말에 비해 어느 정도의 사업체수 및 노동자수의 감

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토목건축업체와 공익사업체(전기·가스·수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사업체를 공제하여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토목건축업체를 분리하는 것이다. 공익사업체의 경우 그 숫자가 매우 적기 때문에 무시하여도 좋지만 토목건축업체는 각 도시마다 상당한 숫자의 사업체들이 존재하였다. 그런데 토목건축업의 경우 1943년과 1947년을 비교하면 전국 평균 91%의 사업체수 감소가 있었다.²¹⁾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일제 말에 존재하였을 토목건축업체수를 공제한 제조업체수를 구한 뒤 앞에서 추정한 제조업체수를 검증한다.

넷째, 전체 제조업체수를 확정하면 여기에 일본인 소유비율을 고려하여 일제말기에 존재했을 일본인 소유 제조업체수를 구한다. 이 수치는 바로 미군정에 의해 귀속사업체로 접수되어야 할 대상이다.

(2) 탈루의 파악

위에서 확정된 일인 소유 사업체들이 제대로 접수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방 이후 접수된 귀속사업체 명부를 분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접수된 귀속사업체에 대한 완전한 명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귀속사업체에 관해 가장 포괄적인 자료를 실고 있는 『경제연감』(1949)도 완전한 귀속사업체 일람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서술하고 있다.²²⁾ 따라서 접수된 귀속사업체의 보다

소가 있었는가를 비교하면서 1944년 현재 각 지역별 사업체수와 노동자수를 제시하고 있다.

21) 조선은행 조사부, 1948, 『조선경제연감』, I-202쪽.

22) 조선은행조사부, 1949, 『경제연감』, III-79쪽.

완전한 일람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귀속사업체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들을 가능한 한 많이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방 후 접수된 귀속사업체에 관한 정보를 싣고 있는 자료로는 다음의 자료들이 참고가 된다. 먼저 조선은행조사부에서 발간한 『경제연감』(1949)에는 주로 1948년 12월 현재를 기준으로 한 귀속사업체일람표가 실려 있다. 『경제연감』은 현존하는 자료들 중 귀속기업체의 명단을 가장 많이 싣고 있는 자료로서 주로 1948년의 상황을 기록했다고 서문에 언급하고 있는데 1949년 상반기까지의 것도 일부 담고 있다. 따라서 게재되어 있는 귀속기업체의 상황은 대부분 1948년 현재의 상황이고, 늦어도 1949년 상반기 이전의 것을 싣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경제연감』 이전 부산지역 귀속기업체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조선여론통신사가 발행한 『경상남도인사록』(1948)이 있다. 이 자료는 1947년 12월에 인쇄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1947년 이전의 상황을 알 수 있다. 부산경남지역 경제계 인사들의 약력이 소개되고 있는데, 주요 약력으로 귀속기업체 관리인 내지 소유 회사가 나오므로 『경제연감』과 대조하여 『경제연감』에 나오는 귀속기업체의 이전 상황 내지 『경제연감』의 누락 기업체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인사록인 관계로 『경제연감』 게재 부산지역 귀속기업체의 전부를 포괄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재무부 聯合清算事務局 간행자료인 『법인대장』(연도미상)은 1950년대 말까지 불하된 귀속사업체의 명단을 싣고 있다. 이 『법인대장』을 통하여 『경제연감』 게재기업체의 불하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그 외에 1954년 2월말 현재까지 불하되지 않은 귀

속사업체 명부를 제공하고 있는 관재청, 『단기4287년 2월말일 현재(미불하기업체) 귀속기업체 명세부』 및 국제신문 <부산의 상맥> 시리즈도 참고로 하였다. 이들 자료는 『경제연감』에 게재된 기업체 중 『경상남도인사록』이나 『법인대장』에 나오지 않는 기업들의 행방 추적, 주 자료로 사용한 『경상남도인사록』, 『경제연감』, 『법인대장』의 誤記 등을 교정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된다.²³⁾

이 자료들 가운데 우선 『경제연감』(1949)의 귀속사업체 일람표를 토대로 접수된 귀속사업체를 파악하고 인사록, 재무부, 관재청 자료를 통해 『경제연감』에 누락되어 있는 귀속사업체를 확인하여 보충한다. 즉 1949년 『경제연감』을 기본으로 하여 인사록, 재무부 자료,²⁴⁾ 관재청 자료를 비교하여 『경제연감』에 누락되어 있는 사업체를 찾아내어 실상에 근접한 귀속사업체 일람표를 재구성한다.²⁵⁾ 그런 뒤 일제말 일본인들이 소유했으리라고 추정되는 업체수와 비교하여 탈루의 정도를 파악한다.

23) 한편 상공부에서 간행한 『단기 4283년도 판 공장광산명부』에서는 1949년 12월 현재 불하되지 않은 귀속사업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온 『대한민국 은행·회사·조합·단체명부』(1950) 역시 1949년 12월 현재 불하되지 않은 귀속사업체의 명단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본고는 이 두 자료를 분석하지는 않았다. 불하의 여부를 연도별로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 자료들은 매우 유용하다.

24) 『법인대장』의 경우 회사명만 나올 뿐 구체적 주소가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대장』을 통해 새로운 귀속기업체를 찾아낼 수는 없다. 다른 자료에서 찾아낸 귀속사업체의 불하 여부를 확인하는데 주로 참조하였다.

25) 이 모든 작업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사명칭, 대표자가 변경되어 귀속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업체로 판단할 수 있는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회사명, 주소, 대표자를 모두 대조하여 귀속사업체의 누락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그리하면 해방 후 접수된 귀속사업체의 실질 규모에 매우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공장의 검토

1. 일제강점기 부산에서의 일본인의 공장 소유실태

1940년대 초반 부산의 공업에 관한 자료는 몇몇 기관에서 생산한 것이 남아있다. 여기서는 먼저 조선총독부 식산국에서 발행한 『조선 공장 명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조선 공장 명부』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표 1>에서 보듯이 1940년 말 현재 부산에는 584개의 제조업체가 있었다. 식료품 업체수가 22.8%로 가장 많고, 다음이 22.4%의 방직, 19.7%의 기계 공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업종을 합하면 전체 부산 제조업체수의 64.9%에 이른다. 식료와 방직을 중심으로 한 경공업이 중심을 이루는 가운데에서도 부산은 상대적으로 기계공업이 발달한 도시였다.

또한 제조업체의 민족별 구성을 보면 전체 제조업체 중 일본인 소유가 81.5%로 나타나고 있다.²⁶⁾ 일본인의 진출이 어느 곳보다 활발했던 사정이 사업체의 소유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회사 기업만을 보면 1940년 말 현재 부산에는 104개의 회사 기업체가 있었다. 이 가운데 88.5%인 92개가 일본인 소유였다. 회사 기업에서의 일본인 소유 비율은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규모가 큰 사업체일수록 일본인 소유가 많았음을 의미한다. 한편 전체 584개 사업체 가운데 회사 기업은 104개로 17.8%를 점하고 있었다. 그런데 <표 2>를 보면 1940년 8월 부산에는 자본금 1만원 미만을 포함한 제조업 회사 기업이 98개가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26) 이는 경남 전체에서의 일본인 소유 비율보다 훨씬 높은 것이었다.

<표 1> 일제강점기 부산 지역 제조업체의 수

(개, %; 1940년 12월 기준)

구 분	개 인		회 사		계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계
방 직	78	35	18		96(73.3)	35(26.7)	131(22.4)
금 속	25	6	5		30(83.3)	6(16.7)	36(6.2)
기계 기구	81	16	17	1	98(85.2)	17(14.8)	115(19.7)
요 업	14	2	10	1	24(88.9)	3(11.1)	27(4.6)
화 학	7	2	16	1	23(88.5)	3(11.5)	26(4.5)
제재 목재	46	4	7	1	53(91.4)	5(8.6)	58(9.9)
인쇄 제본	18	9	3	1	21(67.7)	10(32.30)	31(5.3)
식료품	98	14	14	7	112(84.2)	21(15.80)	133(22.8)
기 타	17	8	2		19(70.4)	8(29.6)	27(4.6)
계	384	96	92	12	476(81.5)	108(18.5)	584(100)

자료 : 조선총독부식산국, 1942. 10, 『조선공장명부』.

주 : ① 방직에 소유 불명인 1개 기업 제외, ② 5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거나 월 이상의 직공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공장을 대상, ③ 대표자의 성명을 보고 구분 함, ④ 일본식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명백히 조선인으로 보이는 것은 조선인 소유에 넣었음, ⑤ 성명의 구별이 애매한 경우에 회사명을 참조하여 한국식 이름으로 상호가 표기된 경우 한국인 소유로 판단함 .그러나 창씨개명으로 일본인 소유가 과대 평가될 가능성이 있음.

<표 2> 일제말 부산의 민족별 회사 제조업체

(개, 만원; 1940년 8월 기준)

구분	500 이상	200~500	100~200	50~100	10~50	5~10	1~5	소계	1만 미만	총계
금속	조선								1	1
	일본			1	2		1	4	2	6
기계 기구	조선						2	2	1	3
	일본		1	1		6	2	4	14	15
화학	조선									
	일본			2	2	2	1	4	11	12
요업 토석	조선									
	일본				1		2	3	1	4
섬유	조선								1	1

	일본	1				5	1		7		7
제재 목제	조선							1	1		1
	일본					1			1	2	3
식료	조선					4	1	1	6	4	10
	일본		1	2		2	3	6	14	5	19
인쇄 제본	조선							1	1	3	4
	일본					2	1	2	5	1	6
기타 공업	조선									1	1
	일본					2		2	4	1	5
전체	조선					4	1	5	10	11	21
	일본	1	1	4	6	22	8	21	63	14	77
	계	1	1	4	6	26	9	26	73	24	98

자료 : 동아경제시보사 편, 1940.11,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주 : ① 불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되 자본금 1만원 미만 기업은 공칭자본금 기준임
 ②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에서 공업은 제조 공업, 양조업, 정미업, 인쇄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생산품거래품을 기준으로 재분류함, ③ 조선 내에 설립된 지점이면 지점의 소재지에 따름, ④ 조선에 본점을 둔 기업체는 본점의 주소지에 따름, ⑤ 민족별 구분은 대표자의 성명에 따름, ⑥ 명백히 조선인으로 보이는 것은 일본식 이름이라도 조선인 자본으로 분류함, ⑦ 어망, 로프, 피혁, 현수막, 간판, 축세공, 지기(紙器)는 기타 공업으로 분류, ⑧ 범랑, 철기, 전구는 기계 기구에 넣음, ⑨ 연탄업은 화학에 넣음.

그리하여 <표 1>과 <표 2>의 자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표 1>의 『공장 명부』 자료는 통상 공칭 자본금 1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표 2>와 비교하려면 이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데, <표 3>이 바로 이를 감안하여 비교한 것이다.

<표 3> 업종별 회사 기업의 비교(개)

구분	방직	금속	기계	요업	화학	제재	인쇄	식료	기타	계
요록	7	4	16	3	11	2	6	20	4	73
명부	18	5	18	11	17	8	4	21	2	104

자료 : <표 1> 및 <표 2>에서 작성.

<표 3>에서 보면 두 자료 사이에는 회사 기업의 수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다. 『조선 공장 명부』의 회사 기업의 수가 『조선 은행 회사 조합 요람』보다 더 많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 하나는 『조선 공장 명부』가 기업 단위가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이 여러 개일 때 그 수만큼 사업장이 수치에 반영된다. 또한 공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점도 계산에 들어간다. 이에 반해 『조선 은행 회사 조합 요람』의 자료는 기업 단위로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두 자료 사이의 차이는 분리되어 있는 공장의 수와 지점의 형태로 존재한 회사 기업의 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표 3>에서 보이는 31개의 차이는 그 차이만큼 다른 지역에 본점을 가진 회사가 부산에 진출했거나 아니면 동일한 기업에 속하는 분할된 공장이 부산에 상당히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2. 일제말 일본인 소유 공장의 추정과 검토

<표 1> 및 <표 2>를 통해 1940년대 초반 부산의 제조업체와 제조업 회사 기업체의 일면을 앞에서 검토한 바 있다. 이러한 검토의 객관화를 위해 또 다른 자료를 검토하여 1940년대 초반 부산의 제조업체와 제조업 회사 기업체수를 확인하기로 한다.

일제 강점기 부산부는 매년 『부산의 산업』이라는 자료를 간행했는데, 이 자료가 일제 말기 부산의 제조업체에 관한 가장 늦은 시기의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자료를 정리한 것이 <표 4>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41년 3월 부산에는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제

조업체가 538개 있었고 이 가운데 99개가 회사 기업이었다.

또한 대표자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기업 중에서 일본인이 대표자인 기업은 382개였고, 66개의 기업은 대표자의 이름을 알 수 없었다. <표 4>에서 1937년이나 1940년 자료를 보면 일제 말 조선인 소유 기업의 비율은 19%와 20% 사이에 머물고 있으며, 1941년 자료에서 대표자 이름을 알 수 있는 제조업체의 조선인 소유 비율도 19% 정도로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표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업체에서도 동일한 비율로 일본인 소유 기업이 존재했다면 1941년 3월 부산 소재 5인 이상을 고용한 일본인 소유 공장은 약 435개에 이르게 된다.

이상과 같은 수치는 <표 1>과 <표 2>에서 확인한 것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표 1>은 1940년 12월 말, 즉 <표 4>보다 3개월 빠른 시기에 조사된 것인데, 여기에는 부산에 584개의 공장이 있었고, 이 가운데 476개가 일본인 소유였다. 일본인 소유 비율은 81.5%로 <표 4>와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표 4>의 제조업 회사 기업수도 <표 1>의 104개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표 4> 일제 강점기 부산공업의 민족별 소유(개)

구분	1937년 12월			1940년 3월			1941년 3월			
	한국인	일본인	계	한국인	일본인	계	한국인	일본인	불명	계
섬 유	10(1)	29(11)	39(12)	13	31(12)	44(12)	11	42(19)	39(2)	92
금 속	4	21(4)	25(4)	3	19(3)	22(3)	4	24(5)	3(1)	31
기계 기구	10(1)	60(4)	70(5)	26(1)	72(8)	98(9)	31(1)	80(12)	11(1)	122
요업 토석	1	25(6)	26(6)	2(1)	24(9)	26(10)	2(1)	24(8)		26
화 학	4(2)	16(10)	20(12)	4(1)	20(10)	24(11)	2	23(12)		25
제재 목재	3	38(7)	41(7)	4	40(8)	44(8)	5(1)	44(8)	6(1)	55
인 쇠업	5(1)	14(2)	19(3)	5	14(2)	19(2)	6	24(3)		30
식료품	34(7)	96(10)	130(17)	20(10)	86(12)	106(22)	22(9)	103(11)	4(2)	129
가스 전기	0	1(1)	1(1)	0	2(2)	2(2)	0	3(3)		3
기 타	3(1)	15(1)	18(2)	4	12	16	7	18(2)	3	28
합 계	74(13)	315(56)	389(69)	81(13)	320(66)	401(79)	90(12)	382(80)	66(7)	538(99)

자료 : ① 1937년 12월 자료는 부산부, 1938.8, 『부산의 산업』, 13-3쪽, ② 1940년 자료는 부산부, 1940.6, 『부산의 산업』, 14-3쪽, ③ 1941년 3월 자료는 부산부, 1942.8, 『부산의 산업』, 12-42쪽을 토대로 각각 작성.

주: ① 민족별 자본의 구분은 대표자 이름에 따랐음, ② 일본식 이름으로 된 것은 원칙적으로 일본인으로 간주함. 따라서 일본인 소유 비율이 약간 과대 평가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일본식 이름이라도 분명히 한국인으로 여겨지는 것은 한국인으로 분류함, ③ 5인 이상 고용하거나 고용 능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함, ④ 1940년 3월 화학 공업에서 1개 업체의 대표자 이름이 불명이나 일본인으로 계산했음, ⑤ 1941년 3월 자료에는 금속 공업과 기계 기구 공업이 통합 수록되어 있으나 생산 품목을 보고 나누었음, ⑥ 자료는 회사별이 아닌 사업장 단위로 되어 있어 다른 자료에 비해 사업체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사업장을 정확히 반영하는 장점이 있음, ⑦ 기타 공업의 경우 지나치게 넓은 품목들을 담고 있어 생산 품목을 보고 적절한 업종으로 재분류했음. 예를 들어 피복양복제망은 섬유, 토석은 요업토석, 성냥은 화학, 제관철강 등은 금속으로 분류했음. 따라서 기타 공업에는 지함(紙函)지대(紙袋)제모(製帽)제승(製繩)침(疊)쇄자(刷子)신발(靴) 제조철기 등의 품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함, ⑧ 괄호 안의 숫자는 회사 기업.

그리고 부산의 제조업체 가운데 일본인 소유 비율도 거의 일치하고 있다. <표 1>에서는 조선인 소유 제조업체수의 비율이 18.5%인데, <표 4>에서 불명을 제외한 것을 보면 18.9%가 조선인 소유로 나타나고 있다. 회사 기업만을 보면 <표 1>에서는

88.5%가 일본인 소유인데, <표 4>에서는 소유 불명인 것을 제외한 92.2%가 일본인 소유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표 1>에서 전체 제조업체 가운데 회사 기업이 차지한 비중은 17.8%로 나타나고 있고 <표 4>에서는 18.9%가 회사 기업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기초적 사실을 토대로 일제 말기 부산의 제조업체수를 추정하기로 하자. 제조업체수를 추정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의 하나로 일제 말까지 시계열 자료가 확인되는 제조업 회사 기업수의 추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표 5>를 보면 부산의 제조업 회사 기업은 1936년에 41개였는데 1941년에는 88개, 1945년에는 153개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936년을 기준으로 할 때 1941년에는 2배, 1943년에는 3배 그리고 1944년 이후에는 4배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해방 직전 부산에는 약 140개의 제조업 회사 기업²⁷⁾이 존재했다. 193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회사 기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후 계속 회사 기업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사 기업이 활발하게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여서, 특히 1940년대에 들어와 활발한 기업 신설이 있었다.²⁸⁾ 회사 기업 전체의 증가세에 따라 제조업 회사 기업도 1940년대에

27) 그런데 <표 5>에 나타나 있는 제조업 회사수는 <표 1>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기본적으로 <표 1>의 자료가 <표 5>와는 달리 사업장 단위로 기업을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표 1>의 1941년 3월 자료에서 동일한 회사에 속하지만 제2 내지 제3 공장의 형태로 사업장이 분리되어 기재된 것이 9개가 확인이 된다. 또한 회사 기업은 흔히 본사 소재지에 따라 분류되었기 때문에 경성(京城) 이외 지역의 경우에 실제 존재했던 사업체수를 과소 계상하는 경향이 있다.

28) 이대근, 1990, 「해방 후 귀속 사업체의 실태와 처리 과정」, 안병직 외 편, 『근대 조선의 경제 구조』, 비봉, 485쪽.

상당한 순증이 있었음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체 회사와 제조업 회사 기업의 추이를 감안할 때 전체 제조업체 역시 증가했을 것이 예상된다.

물론 제조업 회사 기업의 증가가 그대로 전체 제조업체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여러 기업이 통합하여 하나의 회사로 발전하는 경우에 회사의 증가는 전체 기업의 감소와 함께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표 5> 업종별 제조업 회사(개)

구분	기계 가구	금속	전기	화학	요업	식품	제재 가구	섬유	인쇄 출판	제조	제조 업계	토건	전체 회사	제조업 비중
1936	0	4	0	1	3	12	5	0	1	15	41	5	100	41.0
1937	1	2	0	1	3	14	5	1	1	14	42	4	101	41.6
1938	1	2	0	1	3	9	4	1	1	20	42	4	103	40.1
1939	1	2	4	1	3	9	6	3	1	25	55	3	118	46.6
1940	2	4	4	1	3	13	5	9	1	28	70	3	157	44.6
1941	1	5	5	2	8	12	7	14	2	32	88	5	195	45.1
1942	1	9	5	2	10	16	9	16	1	38	107	6	225	47.6
1943	1	11	6	3	14	18	10	22	3	42	130	8	262	49.6
1944	5	12	7	4	17	18	10	26	3	44	146	8	288	50.7
1945	7	12	7	6	17	18	10	29	3	44	153	11	304	50.3

자료 : 조선은행 조사부, 1949, 『경제연감』, IV-142-143쪽에서 작성.

주: ① 회사 기업 업종에서 광업, 토건, 농림, 수산, 금융, 보험, 운수, 창고, 무역, 상업 기타를 제외한 것임, ② 제조는 열거된 제조업종 이외의 제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표 6> 해방직전 부산 지역 회사 기업 신설과 해산(개)

구분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신설 회사	29	40	32	48	64	36	48	38	26
해산 회사	28	38	17	9	26	6	11	12	10
순 증	1	2	15	37	38	30	37	26	16
제조업 순증	1	0	13	15	18	19	23	16	7

자료 : 조선은행조사부, 1949, 『경제연감』, IV-142-143쪽에서 작성.

실제로 태평양전쟁 말기로 접어들면서 일제는 기업 정비와 기업 통합을 강제로 실행했는데, 회사의 증가에는 이러한 영향이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이다. 부산 지역의 자료에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전국의 경향을 보면 이런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표 7> 해방 전후 남한의 사업체수와 노동자수 변화(개, 명)

구 분	사업체				노동자			
	1943	1944. 6	1946. 11	1947. 3	1943	1944. 6	1946. 11	1947. 3
업체수	10,065	9,323	5,249	4,500	255,393	300,520	122,159	133,979
지 수	100	93	52	45	100	193	79	86

자료 : 남조선과도정부 중앙경제위원회, 1948, 『남조선 산업노무력 및 임금조사』, 19쪽 및 조선은행 조사부, 1948, 『경제연감』, I - 202쪽에서 작성.

주: ① 5인 이상 사업장 대상임, ② 1943년=100.

<표 7>에 따르면 1944년 6월에는 1943년보다 제조업체수가 조금 감소하고 있다. 그렇지만 고용자수는 크게 늘고 있어서 사업장의 감소가 기업 통합에 의한 것임을 읽게 한다. 따라서 전국적인 경향에서 볼 때 일제 말 제조업체수는 1942년이나 1943년에 정점에 도달했다가 이후 기업 통합의 영향으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을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부산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 정비와 통폐합은 시장 논리에서가 아니라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강제한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거의 같은 시기에 비슷한 강도로 추진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일제 말기 부산에서 존재했을 제조업체수의 추정을 위해서는 해방 직전보다 1943년경의 사업체수를 추정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 생각한다. 즉 제조업 회사 기업수의

추이에서 전체 제조업체수를 추정하려면 기업의 통폐합이 크게 진전되지 않은 시기의 자료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이다.

<표 5>에서 보면 1943년 말 부산의 제조업 회사 기업은 130개로 나타난다. 그리고 <표 1> 및 <표 4>에서 보면 전체 제조업체 가운데 회사 기업은 약 18%였다. 이러한 비율로 1943년의 회사 기업을 이용하여 1943년의 전체 제조업체수를 역산하면 1943년 말을 기준으로 부산 지역 제조업체는 722개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수치는 한편에서는 과소 평가된 것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과대 평가될 소지가 있는 것이기도 하다. 추정의 근거가 된 <표 5>의 제조업 회사업체수는 다른 자료에 비해 과소 평가되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추정된 제조업체수는 과소 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표 7>에서 보듯이 전국적으로 1944년에는 1943년보다 사업체에서 다소 감소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면 1944년에는 추정된 제조업체수보다 실제로는 적은 제조업체가 실재한 것이 되기 때문에 다소 과대 평가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서 위에서의 추정이 어느 정도 실상을 반영한 것인가를 다른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기로 한다. 추정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1944년 6월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남조선 산업 노무력 및 임금 조사』²⁹⁾가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44년 6월 현재 부산에는 749개의 제조업체가 있었던 것으로 되어있다.³⁰⁾ 업종별로 존재했던 제조업체 수는 나와

29) 남조선과도정부 중앙경제위원회, 1948, 『남조선 산업 노무력 및 임금 조사』.

30) 남조선과도정부 중앙경제위원회, 위의 책, 20쪽.

있지 않지만 조사의 기준이 일체의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검증의 자료로는 매우 유용한 것이다. 그런데 『남조선 산업 노무력 및 임금 조사』는 다른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토목·건축 업체와 공익 사업체³¹⁾(전기·가스·수도)까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만큼 과대 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토목·건축 업체를 공제할 수 있다면 더 근사한 비교값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남조선 산업 노무력 및 임금 조사』에 의하면 1946년 11월 부산 지역에는 10개의 토목·건축 업체가 존재한 것으로 나와 있다.³²⁾ 그런데 해방 직후의 토목·건축 업체는 가장 사업체수의 감소가 심했다.³³⁾ 1947년 3월을 기준으로 할 때 1943년 8월에 비해 토목·건축에서는 전국 평균 91%의 사업체수 감소가 있었다. 한편 1943년 6월과 1946년 11월을 비교한 자료는 토목 건축업체수에서 약 82.4%의 감소가 있었음을 또한 보여준다.³⁴⁾

해방 직후의 감소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1946년 11월 현재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1944년 자료가 없기 때문에 1943년 대비 감소율 82.4%를 적용하면 1944년 경 부산에는 약 56개의 토목·건축 업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1944년 6월의 공장 숫자 749개에서 56개를 공제하면 1944년 현재 부산의 제조업체는 약 693개 정도가 실재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를 제조업 회사기업수에서 추정한 722개와 비교하면 29개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큰 차이가 나지는 않고 있다. 종

31) 공익 사업체의 경우 일제 강점기에는 극소수였기 때문에 무시해도 좋다.

32) 남조선과도정부 중앙경제위원회, 위의 책, 401쪽.

33) 조선은행조사부, 1948, 『조선경제연보』, I-202쪽.

34) 조선은행조사부, 1948, 『조선경제연보』, I-202쪽 및 남조선과도정부 중앙경제위원회, 위의 책, 25-48쪽.

합적으로 볼 때 일제 말 즉 해방 직전인 1944년 현재 부산에는 약 693개에 이르는 제조업체가 있었음은 대체로 실재에 근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조업체수는 물론 조선인과 일본인 소유 모두를 포함한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전체 공장 중 조선인 소유 비율은 대개 19%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나머지 81%는 일본인 소유였다. 이런 비율이 일제 말에도 유지되었다면 전체 693개 제조업 사업체 가운데 약 561개가 일본인 소유였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추정이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면 해방과 함께 미군정에 의해 접수 대상이 되었을 부산 지역 귀속 사업체(공장)는 약 560여 개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미군정기 귀속사업체의 접수

1. 접수 상황의 확인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소유하였던 사업체가 해방직후 얼마나 접수가 되고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쳐 불하되었는가를 추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귀속기업체의 사명이 바뀐다던가(특히 일본식 이름은 초기에 사명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 해방 전 하나였던 기업이 해방 후 공장 별로 분리되어 관리 불하되는 것 등으로 추적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하여 남아있는 관련 기록 또한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부정확한 것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많은 기록의 경우 중복기재는 물론 탈자, 오자 등이 무수히 발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상황 때문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 하나 하나를 일일이 비교 검토하여 접수와 관리 그리고 불하의 전모를 밝히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제시하였던 자료를 토대로 엄밀한 자료비판과 검증은 거쳐 정리한 업종별 접수확인제조업체수는 다음과 같다.³⁵⁾

1) 업종별 접수 상황

(1) 금속기계

『경제연감』(1949)에서 금속기계공업으로 분류되어 기재된 기업체 수는 총 97개였는데, 이 가운데 중복기재가 확실한 3사를 제외하면 94개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중복 기업 3개사의 명단은 부산제관공장(부산철공소), 조선경합금공업, 삼호상회공업소였는데, ①동일 기업의 중복기재(2건; 부산제관공장, 조선경합금공업)와 ②타 업종에서 중복기재(1건; 삼호상회공업소→기계공업과 기타공업에 중복기재)가 원인이었다.

한편 『경상남도인사록』(1948)에는 있으나 『경제연감』에서 확인되지 않는 기업이 15개사나 되었다. 그렇지만 『경상남도인사록』과 『경제연감』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관재청 자료에서 추가로

35) 주지하다시피 일제강점기 공장은 통상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되고 기록되었다. 앞에서 검토한 일제강점기 부산의 제조업체 역시 모두 5인 이상 고용 업체들이다. 이 5인 이상 고용 업체는 귀속사업체의 관리에서도 역시 적용되었는데, 종업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5만원 이상의 대공장은 도공업과가 관리하고, 일반주택, 점포, 창고, 대지와 종업원 5명 이하를 사용하는 5만원 이하의 소공장은 상업은행 재산관리과에서 관리하였다. 민주중보, 1946.6.2.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가 파악하고 기록한 귀속사업체는 일제강점기 이래 5인 이상을 고용한 업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접수가 확인되는 업체는 없었다. 종합하면 『경제연감』에서 94개사, 『인사록』에서 15개사 총 109개사가 금속기계공업에서는 접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화학

『경제연감』(1949)에서는 화학공업 기업 57사가 접수된 것을 확인하였다. 원래 『경제연감』에는 총 67개 업체가 기록되어 있으나, 이 중 동일 회사의 중복기재가 9건, 마산 소재 회사 1건을 확인하여 이들을 제외한 57개사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중복기업은 9개사로 경남약품, 동래연탄, 동일고무(아세아테-프), 동화코크스(骸炭), 부산유지, 조광초자공업, 조선고무벨트(조대), 조선제유, 홍아고무임이 확인되었다. 중복의 경위를 보면 ①중앙직할과 지역별 중복기재(3건; 조선고무벨트, 조선제유, 홍아고무)³⁶⁾, ②『경제연감』(1949)에서 같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시를 하여 한번 더 기재한 업체(2건; 경남약품, 부산유지), ③같은 회사의 단순 중복기재(2건; 동래연탄, 조광초자), ④사명 변경에 불과하나, 이전 사명의 회사를 현재 존재하지 않는 다른 회사로 판단하여 ‘☆’표시를 하여 한번 더 기재한 업체(1건; 동일고무), ⑤같은 회사를 서로 다른 업종에 중복기재하고 한 쪽은 존재하지 않는 다른 회사로 판단하여 ‘☆’표시를 하여 한번 더 기재한 업체(1건; 동화코크스)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마산소재 기업이 부산에 있는 것으로 잘못 기재된 회사는 馬山皮革興業주식회사였다.

한편 『경상남도인사록』(1948)에는 있으나 『경제연감』(1949)에서

36) 화학공업의 중앙직할은 전부 중복기재 되어 있다.

는 확인되지 않는 기업이 4개가 있었으며, 『경상남도인사록』과 『경제연감』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관재청 발간의 『단기4287년 2월말일 현재(미불하기업체) 귀속기업체 명세부』에서 확인되는 기업이 2사가 추가로 확인이 되었다.

종합해보면 화학공업의 경우 『경제연감』에서 57사, 『경상남도인사록』에서 4사 그리고 『단기4287년 2월말일 현재(미불하기업체) 귀속기업체 명세부』에서 2개의 접수된 사업체를 확인하여 화학공업에서는 총 63개사가 귀속사업체로 접수되었음을 밝혔다.

(3) 요업

『경제연감』에서 요업으로 분류되어 기재된 기업체 수는 총 25개인데 이중 중복기재가 확실한 1개사를 제외하면 24개의 귀속사업체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복 기업은 조선특수연화로 중복의 경위는 동일 기업의 중복기재이다. 한편 『경상남도인사록』에는 기록되었으나 『경제연감』에서 확인되지 않는 회사는 3개업체이며, 『경상남도인사록』과 『경제연감』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관재청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업체는 없었다.

(4) 섬유

『경제연감』에서 섬유공업으로 분류되어 기재된 기업체 수는 총 50개 사인데 이 중 중복기재가 확실한 8개 기업을 제외한 41개사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복 회사 8건의 명단은 櫛(神)原絹(糸)공장☆(大成직물공장), 봉래직물공업, 조선견직, 조선방직, 조선연사, 조선염공, 조선제망, 조양직물이다. 중복 경위를 보면 ①중앙직할과 지역별 중복기재(2건; 조선견직, 조선방직),

②같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시를 하여 한번 더 기재한 업체(3건; 봉래직물, 조선염공, 조선제망), ③같은 회사의 단순 중복기재(2건; 조선연사, 조양직물), 그리고 ④사명 변경을 파악하지 못해 중복기재 한 경우[1건: 榭(神)原絹(糸)공장☆(大成직물공장)]였고, 여기에 타 지역 회사의 오류기재(1건: 조선특수섬유)가 1개사 있었다.

한편 『경상남도인사록』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경제연감』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기업이 9개사 있었다. 그렇지만 『경상남도인사록』과 『경제연감』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관재청 자료에서 접수가 확인되는 업체는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

(5) 식품

『경제연감』에서 식품공업으로 분류되어 기재된 기업체 수는 총 89개였는데 이 가운데 중복기재가 확실한 6개사를 제외한 83개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복 기업 6개사의 명단은 동해식품합자회사, 부전양조공장(부전양조장), 산내주조장, 신한양조장, 용두장유양조장(제조소), 일동식료품주식회사였는데, 중복의 경위는 전부 동일 기업의 중복기재에 의한 것이었다.

한편 『경상남도인사록』에는 기록되었으나 『경제연감』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기업이 2개였고, 『경상남도인사록』과 『경제연감』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관재청자료에서는 접수가 확인되는 기업이 2개사가 있었다.³⁷⁾

37) 여기에서 확인되는 또 다른 사실은 『경제연감』이 ‘대규모 정미소’들을 기록에서 누락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부산의 상백」 기록과 대비하면 보다 명확해 진다.

(6) 기타공업

『경제연감』에 기재되어 있는 귀속사업체수는 총 83개인데 이 가운데 중복기재가 6건으로 이를 제외하면 77개 업체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이 된다. 중복기업 6개사의 명단은 남선수산, 대안제재소, 부산항업, 서일본기선(조선기선), 수곡수산, 한상오프세트(한상롱오프세트)인데 중복의 경위는 ①중앙직할과 지역별 중복기재(5건; 남선수산, 대안제재소, 부산항업, 서일본기선³⁸), 수곡수산), ② 『경제연감』에서 같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시를 하여 한번 더 기재한 업체(1건; 한상오프세트)이다.

한편 『경상남도인사록』에는 기록되었으나 『경제연감』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업체가 1개사가 확인이 되었으며, 『경상남도인사록』과 『경제연감』에서 확인되지는 않지만, 관재청자료에서 접수가 확인된 귀속사업체가 4개사가 확인되었다.

2) 접수에 대한 평가

이상의 검토를 통해 업종별로 접수가 확인된 귀속사업체를 종합 정리한 것이 <표 8>이다. 여기에서 보면 일제강점기 부산에서 일본인들이 소유하였던 제조업체 가운데 421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8) 서일본기선은 조선기선이 전시기에 통합된 회사인데, 조선기선은 중앙직할, 서일본기선은 지역에 중복기재한 특이한 사례이다.

<표 8> 접수가 확인되는 업종별 귀속사업체수(개)

	금속기계	화학	요업토석	섬유	식품	기타	계
경제연감	94	57	24	41	83	77	376
인사록	15	7	3	9	2	1	37
명세부	0	2	0	0	2	4	8
계	109	66	27	50	87	82	421

주 : 1. 명세부는 『단기 4287년 2월말일 현재 (미분하기업체) 귀속기업체 명세부』를 말하며 인사록은 『경상남도인사록』을 말함. 2. 위 업종분류는 『경제연감』 업종분류를 수정한 것이다. 금속과 기계는 통합하여 금속기계로 하였으며, 전기공업(중앙직할의 전기국 소속 2개회사 및 지방관할 4개회사, 전부 전구제조)은 금속기계에 포함시켰다. 기타공업, 광업, 수산업(단 제염과 수산가공은 식품에 포함), 교통, 농림, 기타는 전부 기타로 하였다. 중앙직할 기업체도 여기에 준하였다. 그리고 상업은 제외하였다.

이러한 접수업체를 통해 해방직후의 상황에서 부산의 귀속사업체가 어느 정도 접수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앞에서 검토하면서 일제말 부산의 제조업체에서 일본인이 소유하였던 사업체수는 약 560개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였다. 전쟁말기로 접어들면서 기업의 통폐합이 강제화되면서 그 보다 일본인 소유 제조업체수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1944년의 제조업체수를 감안할 때 일제말 일본인들이 부산에서 소유했으리라 추정되는 5인 이상 고용 제조업체수는 560개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표 9> 업종별 접수귀속사업체 비율 및 일제하 일인소유 제조업체 비율 비교(개, %)

	금속	기계	화학	요업 토석	섬유	식료	목재 제재	인쇄 제본	기타	
접수귀속 사업체	36	73	66	27	50	87	21	13	48	421
구성비	8.6	17.5	15.1	6.5	12.0	20.8	5.0	3.1	11.5	100.0
일인소유 제조업체수	24	80	23	24	42	103	44	24	21	385
구성비	6.2	20.8	6.0	6.2	10.9	26.8	11.4	6.2	5.5	100.0

자료 : <표 4> 및 『경제연감』 등 귀속사업체에 관한 자료 종합

주 : 1. 일인소유 제조업체수는 1941년 3월 현재임(<표 4> 참조).

2. 『경제연감』에는 목재제재와 인쇄제본이 기타공업에 섞여 있으나, 비교의 편의를 위해 분리하였음.

다시 말하면 1944년의 수치를 기준으로 할 때 해방직후 귀속 사업체로 접수되었어야 할 사업체는 560여개였다. 그런데 실제로 접수가 확인이 되는 것은 421개이다. 결국 당초 접수대상의 약 74.64%만이 접수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표 9>는 접수가 확인된 귀속사업체의 업종별 구성을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소유하였던 업종별 구성과 비교해 본 것이다. 화학, 목재제재, 기타공업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업종에서는 대체로 유사한 구성비를 보이고 있어 접수가 확인된 귀속사업체가 실태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준다.

물론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자료들이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것이기에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또 상공부에서 간행한 『단기 4283년도 판 공장광산명부』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온 『대한민국 은행·회사·조합·단체명부』(1950)를 본고에서는 검토하지 않았는데, 이 자료들을 검토할 경우 접수가 되었지만

앞에서의 자료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았던 업체들이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이상의 분석에서 볼 때 일제말의 기업통폐합 및 소개로 인한 접수대상업체수의 감소가능성 그리고 추가적인 자료의 검토로 인한 접수된 사업체의 추가 확인 가능성을 감안한다 해도 일제말 일본인이 소유하였으리라고 추정되는 업체 5개 가운데 1개 업체는 제대로 접수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이제까지 막연하게 미군정의 무책임한 접수과정과 패주하는 일본인들의 무차별적인 매각 및 파괴로 대부분의 귀속사업체가 접수망을 벗어났다는 막연한 주장과는 거리가 멀지만 실제로 모든 일본인 사업체들이 접수되었던 것도 아니었음을 확인하게 한다고 하겠다.

2. 관리와 불하 그리고 유실

이상의 귀속사업체의 접수상황을 파악하면서 연구자들은 접수된 귀속사업체의 불하여부 확인 및 귀속사업체 관리인과 이후 불하인의 연속성 여부 등에 관한 추가적 조사를 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귀속사업체의 접수여부와 함께 일제가 남긴 식민지 유산의 연속과 단절을 판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업종별 파악과 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업종별 검토

(1) 금속 기계

『경제연감』에 기록된 기업 94개 사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28개 사는 안정적 관리권을 유지하고 이 권리를 이용하여 해당 회사

의 소유권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이들 중 16개사는 이미 1947년 이전부터 관리인이었다. 반면 관리인과 불하인이 다른 경우는 17사이다. 불하가 확인되지 않는 기업은 60개사(경제연감 49, 경상남도인사록 11)인데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1949년 현재 존재가 불분명한 기업들이다. 『경상남도인사록』의 11개사는 『경제연감』에서 이미 보이지 않고, 『경제연감』의 49개사에서 15개사가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회사였다. 따라서 1949년까지 존속이 확인되나 이후 불하가 확인되지 않는 회사는 60개사 중 34개사 정도이다. 이들 회사는 1949년 이후 어느 시기에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크다.³⁹⁾

(2) 화학공업

『경제연감』에 기록된 57개 기업체 중 절반가량인 24개사는 안정적 관리권을 유지하고 이 권리를 이용하여 해당 회사의 소유권을 획득했다. 또 이들 중 절반은 이미 1947년 이전부터 관리인이었다. 이들의 비중은 관리인과 불하인이 다른 12개사의 2배에 이른다. 화학공업은 고무공업으로 대표되는 해방 후 유망업종으로 부상되었던 영역으로 기존에 귀속기업체에 대한 관리권 쟁탈전이 치열했다고 여겨지는 곳이었으나, 의외의 결과이다. 물론 해방직후 관리권 쟁탈전이 심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최소한 1947년 이후에는 안정적 관리권을 유지하는 회사가 많았다는 것도 사실로 확인된다.

불하가 확인되지 않는 회사 25개사(경제연감 22, 경상남도인사

39) 물론 전부가 유실기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인대장』이 불하된 모든 기업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것은 화학공업의 예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록 3) 중 상당수는 이미 1949년 현재 존재가 불분명한 회사이다. 『경상남도인사록』의 3사는 『경제연감』에서 이미 보이지 않고, 『경제연감』의 22사 중에서 7사가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회사였다. 따라서 1949년까지 존속이 확인되나 이후 불하가 확인되지 않는 회사는 25사 가운데 15개사이다. 이들 기업은 1949년 이후에서 1954년 2월 말 사이의 어느 시기에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부가 유실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예를 들어 『경제연감』 1949에서 고무신제조 공장으로 尹晷權에 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남합자유한회사의 경우 『법인대장』에서는 불하의 기록이 없지만, 『부산상공회의소 100년사』(1989)에는 1949년 현재 朴元錫이 관리. 1952년 金秉國이 불하받은 것으로 기록하고 1962년 소멸된 것으로 나온다⁴⁰⁾. 또 『경제연감』에는 大洋석탄공업소의 관리인이 鄭海永⁴¹⁾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동 회사의 불하기록은 『법인대장』에는 없다. 그렇지만 동 회사는 1962년 현재 정해영의 경영회사로 확인이 되고 있다.⁴²⁾

(3) 요업

『경제연감』에 기록된 회사 중 38%(24사 중 9사)는 안정적인 관리권을 유지하고 이 권리를 이용하여 해당 회사의 소유권을 획득했다. 또 이들 중 절반은 이미 1947년 이전부터 관리인이었다. 반면 관리인과 불하인이 다른 경우는 3사이다. 불하가 확인되지 않는 기업 15개사(경제연감 12, 경상남도인사록 3) 중 상당

40) 부산상공회의소, 1989, 『부산경제사』, 192쪽. 그러나 박원석과 김병국은 『인사록』, 『연감』, 『대장』의 어디에서도 이름이 발견되지 않는다.

41) 『경제연감』 1949에는 ‘鄭海水’로 기록되어 있지만, ‘鄭海永’의 오타가 확실하다.

42) 부산상공회의소, 1962, 『부산상공명감』.

수는 이미 1949년 현재 존재가 불분명한 회사이다. 『경상남도인사록』의 3개사는 『경제연감』에서 이미 보이지 않고, 『경제연감』의 12개사 중에서 5개사가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기업이었다. 따라서 1949년까지 존속이 확인되나 이후 불하가 확인되지 않는 사업체는 15개사 중 대폭 감소한 7개사이다. 이들 기업은 1949년 이후 유실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타 공업 분석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전부가 유실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섬유

『경제연감』에 기록된 회사 중 약 50%(41사 중 19사)는 안정적 관리권을 유지하고 이 권리를 이용하여 해당 회사의 소유권을 획득했다. 또 이들 중 70% 이상(14개사)의 압도적인 비율이 이미 1947년 이전부터 관리인이었다. 반면 관리인과 불하인이 다른 경우는 5사에 불과한 것이 섬유공업의 특징이다. 불하가 확인되지 않는 기업 24개사(경제연감 17, 경상남도인사록 7) 중 상당수는 이미 1949년 현재 존재가 불분명한 회사이다. 『경상남도인사록』의 7개사는 『경제연감』에서 이미 보이지 않고, 『경제연감』의 17개사 중에서 3사가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기업이었다. 따라서 1949년까지 존속이 확인되나 이후 불하가 확인되지 않는 회사는 24개사 중 대폭 감소한 14개사이다. 이들 회사는 1949년 이후 유실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동양면업’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전부가 유실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식품

『경제연감』에 기록된 기업 중 약 40%(83사 중 32사)는 안정적 관리권을 유지하고 이 권리를 이용하여 해당 회사의 소유권을

획득했다. 그러나 이들 중 이미 1947년 이전부터 관리인이었던 경우로 확인되는 회사는 9사로 그 숫자가 많지 않다. 한편 관리인과 불하인이 다른 경우는 13개사이다.

불하가 확인되지 않는 기업 40개사(경제연감 38, 경상남도인사록 1, 관재청 1) 중 1949년 현재 존재가 불분명한 회사는 8개사(경제연감 7사, 경상남도인사록 1사)이다. 따라서 1949년까지 존속이 확인되나 이후 불하가 확인되지 않는 회사는 38사 중 8사가 감소한 30개사이다.

(6) 기타공업

『경제연감』에 기록된 기업 중 20%(77사 중 15사) 정도만이 안정적 관리권을 유지하고 이 권리를 이용하여 해당 회사의 소유권을 획득했다. 또 이들 중 4개사만이 1947년 이전부터 관리인이었다. 반면 관리인과 불하인이 다른 경우는 18개사에 이르고 있다. 기타 공업은 다른 공업에 비해 관리권의 불안정성이 훨씬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불하가 확인되지 않는 기업 48개사(경제연감 44, 관재청 4) 중 상당수는 이미 1949년 현재 이미 존재가 불분명한 사업체이다. 『경제연감』의 44개사 중에서 17개사가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회사였다. 따라서 1949년까지 존속이 확인되나 이후 불하가 확인되지 않는 사업체는 44개사 중 대폭 감소한 27개사이다. 이들 기업체는 1949년 이후 어떤 시기에 유실되었을 것이다.

2) 종합적 평가

이상의 개별 업종을 대상으로 한 분석가운데에서 『경제연감』에 기재된 것만을 뽑아 다시 종합한 것이 <표 10>이다. 이 표를 통해 크게 3가지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불하여부가 확인이 되는 귀속사업체 가운데 관리인과 불하인이 일치하는 비중을 업종별로 보면 금속기계 62.22%, 화학 65.71%, 요업 75.0%, 섬유 79.17%, 식품 71.11%, 기타 45.45%로 전체 평균 69.07%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불하를 받은 사람의 약 3분의 2가 관리인을 거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것은 귀속사업체의 관리인이 되는 것이 곧 그 사업체를 불하받는 권리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둘째, 『경제연감』에 기재된 기업 가운데에서 관리인이 나중에 불하를 받은 기업 중 이미 1947년에 관리인으로 선정되었던 사람이 나중에 불하대상자가 된 경우의 비율이다. 이 비율을 업종별로 보면 금속기계 57.14%, 화학 52.17%, 요업 44.44%, 섬유 73.68%, 식품 28.13%, 기타공업 26.67%였고 전체로는 44.03%였다. 업종별로 상당한 편차가 발견되는데, 섬유의 경우 1947년경에 이미 관리를 맡은 사람이 불하를 받은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금속기계, 화학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그에 비해 기타공업과 식품에서는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업종에서의 비중은 44.03%로 나타나 관리인=불하대상자가 된 기업 가운데 이미 1947년경에 관리인으로 있던 사람이 나중에 불하를 받은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할 것이다.

셋째, 『경제연감』에 기재된 귀속사업체 가운데 불하가 확인이

되는 귀속사업체의 비중이다. 금속기계 47.87%, 화학 61.4%, 요업 50%, 섬유 58.54%, 식품 54.22%, 기타 42.86%로 평균 51.6%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즉 1950년대 말까지 불하된 것이 확인되는 『경제연감』 기재 귀속사업체는 약 절반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접수된 귀속사업체의 약 절반은 불하여부를 알 수 없는 것으로서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업체들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0> 『경제연감』에 기재된 귀속사업체의 불하 및 유실 추적 (개, %)

업종	불하확인여부		1947 (A)	1949 (B)	1950년대 말까지(D)	A+B	A(A+B)	불하확인/ 총계	B(A+B)	관대인 불하인 알차비율
	금속기계	불하확인	관대인따 불하인 일치	16	12		28	57.14		
		관대인따 불하인 불일치		17		17				
		소계	16	29		45				62.22
불하미확인		불하가 확인안됨		15	34	49			30.61	
		총계	16	44	34	94		47.87		
화 학	불하확인	관대인따 불하인 일치	12	11		23	52.17			
		관대인따 불하인 불일치		12		12				
		소계	12	23		35				65.71
	불하미확인	불하가 확인안됨		7	15	22			31.82	
		총계	12	30	15	57		61.40		
요 업	불하확인	관대인따 불하인 일치	4	5		9	44.44			
		관대인따 불하인 불일치		3		3				
		소계	4	8		12				75.00
	불하미확인	불하가 확인안됨		5	7	12			41.67	
		총계	4	13	7	24		50.00		
섬 유	불하확인	관대인따 불하인 일치	14	5		19	73.68			
		관대인따 불하인 불일치		5		5				
		소계	14	10		24				79.17
	불하미확인	불하가 확인안됨		3	14	17			17.65	
		총계	14	13	14	41		58.54		
식 품	불하확인	관대인따 불하인 일치	9	23		32	28.13			

		관대인파 불하인 불일치		13		13			
		소계	9	36		45			71.11
	불하미확인	불하가 확인인됨		7	31	38			18.42
		총계	9	43	31	83		54.22	
기타	불하확인	관대인파 불하인 일치	4	11		15	26.67		
		관대인파 불하인 불일치		18		18			
		소계	4	29		33			45.45
	불하미확인	불하가 확인인됨		17	27	44			38.64
		총계	4	46	27	77		42.86	
전체	불하확인	관대인파 불하인 일치	59	67		134	44.03		
		관대인파 불하인 불일치		68		68			
		소계	59	135		194			69.07
	불하미확인	불하가 확인인됨		54	128	182			29.67
		총계	59	189	128	376		51.60	

자료 : 『경제연감』 등 귀속사업체에 관한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함.

넷째, 불하가 확인되지 않는 귀속사업체 가운데 『경제연감』 기재 당시, 즉 1948년 말 무렵에 이미 확인이 되지 않는 사업체의 비중에 관한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화학 31.82%, 섬유 17.65%, 금속기계 30.61%, 식품 18.425, 요업 41.67%, 기타 38.64%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평균으로는 29.67%의 비중에 달한다. 결국 유실 귀속사업체의 약 30%가 이미 1948년 말 당시에 확인이 되지않는 상황이었다.

IV. 결 론

1. 논의의 요약

주지하다시피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소유하였던 사업체는 해방직후 미군정에 의해 귀속사업체로 접수되었다. 이러한 귀속사업체가 어느 정도 접수되었으며 또 사업체로서 존속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된 것이 없다.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우선 일제는 일제말 자료들을 은폐하였기 때문에 해방직전 일본인들이 소유하였던 사업체의 실체를 현재로서는 파악할 수 없다. 게다가 해방직후 미군정에 의해 접수되었던 사업체에 관한 완전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이제까지 귀속사업체의 접수와 관리에 대해서는 연구들이 진전되어 오지 못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 상의 문제를 넘어서고자 부산을 대상으로 귀속사업체의 접수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일제말 부산의 일본인 소유 사업체수를 추정하고, 해방직후 귀속사업체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여러 자료를 상세히 조사·비교하여 접수된 사업체를 확인해 가는 방법을 취하였다.

1944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해방직후 귀속사업체로 접수되었어야 할 사업체는 560여개였는데, 실제로 접수가 확인이 되는 것은 421개로 당초 접수대상의 약 74.64%만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일제말의 기업통폐합 및 소개로 인한 접수대상업체수의 감소가능성 그리고 추가적인 자료의 검토로 인한 접수된 사업체의 추가 확인을 감안한다 해도 일제말 일본인이 소유하였으리라고 추정되는 업체 5개 가운데 1개 업체는 제대로 접수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제까지 막연하게 미군정의 무책임한 접수과정과 패주하는 일본인들의 무차별적인 매각 및 파괴로 대부분의 귀속사업체가 접수망을 벗어났다는 주장과는 거리가 멀지만 실제로 모든 일본인 사업체들이 접수되었던 것도 아니었음을 확인하게 한다고 하겠다.

한편 본 연구는 귀속사업체의 접수비율에 대한 확인과 함께

귀속사업체의 존속여부 그리고 귀속사업체 관리인이 이후 불하를 받는 정도 등에 관한 연구도 병행하였다.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불하여부가 확인이 되는 귀속사업체 가운데 관리인과 불하인이 일치하는 경우는 전체 평균 69.07%로 불하를 받은 사람의 약 3분의 2가 관리인을 거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귀속사업체의 관리인이 되는 것이 곧 그 사업체를 불하받는 권리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관리인이 불하를 받은 기업 가운데 이미 1947년경에 관리인으로 있던 사람이 약 44.03%로 절반 가까이 되었다. 업종별로는 편차가 있었지만 관리권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관리권 쟁탈전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던 섬유와 화학의 경우 실제로는 다른 업종에 비해 안정적 관리권을 유지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경제연감』에 게재된 귀속사업체 가운데 이후 불하가 확인이 되는 것은 평균 51.6%로 약 절반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에 그쳤다. 결국 접수된 귀속사업체의 약 절반은 불하여부를 알 수 없는 것으로서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특히 불하가 확인되지 않는 귀속사업체 가운데 이미 1948년말 무렵에 확인이 되지 않는 사업체의 비중이 평균 29.67%에 달하여 1948년말 경에 이미 유실귀속사업체의 약 30%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

2. 연구의 의의

근년에 들어와 일본에서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주장이 매우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일본의 식민지를 겪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전후 고도성장을 일본의 식민통치와 연결 짓는 이러한 역사인식은 글로벌화의 경향과 더불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 한 가운데에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소유하였던 사업체 즉 이후의 귀속사업체가 있다.

그렇지만 일본의 주장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본인이 소유하였던 사업체의 접수와 이후의 관리 그리고 불하 이후의 성장이라는 일련의 단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과제는 바로 그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고 하였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그러한 역사적 과제에 답을 하고 또 연구의 공백시대라고 할 수 있는 1940년대와 1950년대 특히 해방 전후 시기의 부산경제의 실상의 한 단면을 밝혔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특히 일제말의 자료통제 및 해방직후 자료의 불완전으로 인해 중요한 역사적 전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 시기의 연구는 제대로 진척되어 오지 못했다. 그러한 연구의 상황에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연구의 물꼬를 터놓은 의의 또한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귀속사업체의 접수확인에 그치지 않고 관리인이 불하를 받은 정도 그리고 귀속사업체로 접수된 이후의 유실 가능성에 관한 분석까지 진전시켜 부산의 역사에서 귀속사업체의 연속과 단절까지를 연구의 시야에 넣은 것은 큰 성과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무엇보다 추가적인 자료의 발굴이다. 사실 일제 말 특히 태평양전쟁시기의 부산경제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은 이후 연구에 결정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또한 귀속사업체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더 많은 자료를 추가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제까지 점수상태가 밝혀지지 않았던 귀속사업체들이 새롭게 많이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더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역시 필요한 작업이다.

참 고 문 헌

- 고승제, 1975, 「공업화로의 산업구조 재편(총설)」, 『한국경제정책 30년사』, 사회와 사상사.
- 공제욱, 1993, 『1950년대 한국의 자본가 연구』, 백산서당.
- 공제욱 외, 1998, 『1950년대 서울의 자본가』, 서울학연구소.
- 관재청, 『단기4287년 2월말일 현재(미불하기업체) 귀속기업체 명세부』.
- 국세청, 1961, 『법인주식대장(국유재산)』.
- 국제신문, 1991, 「부산의 상맥 시리즈」
- 국회재경위, 1955, 『귀속재산 대규모 기업체의 우선적 매각진상에 대한 조사보고』.
- 김기원, 1990, 『미군정기의 경제구조-귀속사업체의 처리와 노동자 자주 관리 운동을 중심으로』, 푸른산.
- 김대래·배석만, 2002.12, 「귀속사업체의 탈루와 유실(1945-1949)-대구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상논총』.
- 김대래·배석만, 2002.12, 「귀속사업체의 탈루와 유실(1945-1949)-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사학』.
- 김대래·배석만, 2002.12, 「귀속사업체의 탈루와 유실(1945-1949)-
광주와 목포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학논집』.
- 김대래·배석만, 2002.10, 「귀속사업체의 탈루와 유실(1945-1949)-
전주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 김대래, 2006.4, 『해방직후 부산 경남의 공업』, 효민.
- 김대래, 2006.4, 『부산 귀속사업체 연구』, 효민.
- 남조선 과도정부 중앙경제위원회, 1948, 『남조선 산업 勞務力 및 임금조사』.
- 동아경제시보사, 1940.11,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 박원표, 1967, 『항토부산』, 태화출판사.
- 배석만, 2006.10, 「日中戰爭期朝鮮重工業株式會社の設立と經營」,
『朝鮮史研究会論文集』 44集.
- 배석만, 2006.9, 「朝鮮重工業株式會社の 戰時經營과 해방 후 재편과정」,
『역사와 경계』 60호.
- 배석만, 2006.4, 「1930년대 식민지 朝鮮의 造船工業 확장과 그 실태」,
『지역과 역사』 18호.
- 배석만, 2005.9, 「朝鮮汽船株式會社の 경영자료 분석」, 『항도부산』 21호.
- 배석만, 2005.8, 「1930~50년대 造船工業 정책과 造船會社の 경영」,
부산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배석만, 2005.8, 「태평양전쟁기 計劃造船과 식민지 造船工業」,
『국사관논총』 107집.
- 배석만, 2004.7, 「朝鮮重工業株式會社 經營資料의 내용과 성격」,
『항도부산』 20호.
- 배석만, 2002.6, 「1950년대 부산지역 고무공업의 구조변화」,
『역사와 현실』 44호.

- 釜山府(1938.8; 1940.6; 1942.8), 『釜山の産業』.
- 부산상공회의소, 1954.11, 『부산상공명감 1954』.
- 부산상공회의소, 1962, 『부산상공명감 1962』.
- 부산상공회의소, 1982, 『부산상의사』.
-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연구원, 1989, 『부산경제사』.
-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90, 『부산시사』, 제2권.
- 상공부, 1950, 『공장광산명부』.
- 상공부, 1950, 『대한민국 은행·회사조합단체명부』.
- 서문석, 1997, 「귀속 면방직기업의 변천에 관한 연구-사례연구를 중심으로」, 단국대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대근, 1990, 「해방 후 귀속사업체의 실태와 처리 과정」, 안병직 외 편, 『근대조선의 경제구조』, 비봉.
- 재경부, 2000, 『귀속재산 청산자료집』.
- 재무부, 연도미상, 『법인대장』.
- 재정경제부 연합청산위원회, 2000, 《국가귀속 청산법인 청산자료집》.
- 재정경제부 연합청산위원회, 2000, 《국가귀속 청산법인 청산자료집 별책 1~4》.
- 정안기, 2002, 「해방 전후 한국 방적업의 구조와 전개-戰時期 조선 방직 경영유산을 중심으로-」, 2002년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 조선여론통신사, 1948, 『경상남도인사록』 .
- 조선은행조사부, 1948, 『조선경제연보』.
- 조선은행조사부, 1949, 『경제연감』.
- 조선총독부, 1941.8, 『공장 광산 운수사업장 사무소 상점수 및 그 소속 노동자-제1회 조선노동기술자통계 조사결과 보고서』.

조선총독부식산국, 1942.10, 『조선공장명부』.

中尾美知子, 1984, 『해방 후 전평·노동운동』, 춘추사.

차철욱, 1996.6, 「해방 직후 부산·경남지역 사업체 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성격」, 부산경남 역사연구소, 『지역과 역사』, 제 1호.

편찬위원회, 1978, 『김지태 회장 창업 45년사』.

허수열, 2003, 「해방시점에 있어서 조선의 일본인 자산에 대한
분석-경상남도 지역의 귀속사업체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연구』 제11권 제2호.